

26. 대구광역시유아교육진흥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 : 2020년 4월 9일
- 제출자 : 대구광역시교육감
- 회부일자 : 2020년 4월 13일
- 상정일자 : 제274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
제1차 교육위원회(2020년 4월 22일),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행정국장 강형구)

□ 제안이유

- 상위법인 「유아교육진흥법」 폐지에 따라 관련 조례가 사문화되었고 시·도별 유아교육진흥협의회의 기능이 유아교육위원회로 대체되어 관련 조례 폐지 정비

□ 주요내용

- 「대구광역시유아교육진흥협의회 운영 조례」를 폐지함

3. 검토보고요지(보고자 : 전문위원 노인만)

- 본 폐지조례안은 조례의 근거 법령인 「유아교육진흥법」 과

「유아교육진흥법시행령」이 2005년 1월 30일 폐지됨에 따라 사문화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폐지에 이견이 없음

- 또한, 현재는 2005년 제정된 「유아교육법」과 「유아교육법시행령」에 따라 각 시·도 교육청에 ‘유아교육위원회’가 설치·운영되고 있으므로, 그 기능을 상실한 「유아교육진흥법」에 근거하여 제정된 「유아교육진흥협의회 운영 조례」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음
- 다만, 해당 조례의 근거법령이 2005년 1월 30일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해당 조례를 폐지하지 않고 오랜 기간 방치한 것은 자치법규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할 수 있으므로,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 재정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없음

5. 토론요지

- 없음

6. 수정안요지

- 없음

7. 심사결과

- 원안가결(재석위원 전원찬성)

8. 소수의견요지

- 없 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 음